

연구 노트

WTO 체제하 일본의 농산물 수입관리와 시사점

김 동 민*

1. 서론
2. WTO 체제하 일본의 품목별 수입관리
3. 시사점

1. 서론

UR 농산물협상 타결에 따라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무역질서와 농업개혁방향으로 세계 농산물시장이 재편되어 나갈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예외 없는 관세화 및 시장접근 원칙에 따라 농산물의 전면적인 시장개방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UR 협상타결 및 세계 무역기구(WTO) 체제의 출범으로 국내보조금 감축의무와 더불어 국내농업정책 및 수입관리정책을 국제규범과 원칙에 합치시켜야 하며 아울러 농업정책의 투명성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농업을 둘러싼 대외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우리 나라 농산물시장도 종전과 달리 완전개방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

에 따라 농가피해가 보다 확대됨은 물론 국내 농산물가격의 불안정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관세화할 경우 수출국에게 일정범위내에서 시장접근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어 시장접근물량을 수입하는 자는 국내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경제적 잉여를 얻게 된다. 또한 시장접근물량이 무분별하게 수입될 경우 국내피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국내 농산물가격안정 정책과 수입을 적절하게 관리함은 물론 관세화이행에 따른 불합리한 수입차익을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수입관리는 WTO 체제가 출범하기 이전에 마련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관세화에 따른 수입관리방안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와 비슷한 여건에 놓여 있는 일본의 UR 이후 수입관리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이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UR 타결이후 일본의 수입관리정책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 검토하고자 한다.

* 책임연구원

2. WTO 체제하 일본의 품목별 수입관리

2.1 일본 이행계획서(C/S) 주요내용

WTO 체제하의 일본 수입관리방안은 대체로 지금까지 운영해온 골격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관세화예외조치를 받은 쌀을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은 모두 관세화하고 국영품목이었던 쌀, 밀, 보리, 유제품, 생사는 그대로 국영무역으로 운용한다. 단지 UR 협상결과에 따라 품목간에 다소의 차이는 있다 (부표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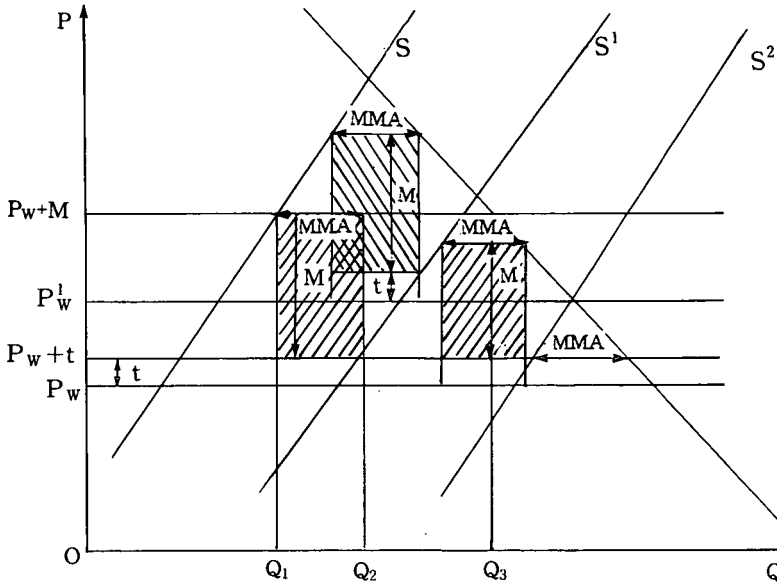
특히 국영무역 품목은 우리 나라와는 달리 마크-업¹을 명기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통상마찰을 사전에 어느 정도 제거하고 장기적으로 국영무역관리가 불필요한 경우 관세와 더불어 국내보호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C/S에 마크-업을 명기하도록 결정하기까지 일본정부는 GATT 2조 1항과 4항 그리고 17조를 면밀히 검토했고 마크-업 부과에 대해 6개월간의 찬반토론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에는 미국이 마크-업을 요구했으나 결국 명기를 결정한 것은 자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마크-업을 명기하는 대신에 시장접근물량을 전량 의무적으로 수입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시장접근보장물량의 완전수입보장을 위해

마크-업의 상한을 결정하고 국제가격이 상승하거나 국내생산이 증가하는 경우 마크-업을 낮출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간단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1 참조).

국제가격이 OP_w 일 경우 수입량은 국내수급차인 Q_1Q_3 이 될 것이다. 이 때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을 Q_1Q_2 라고 하면 MMA 물량에 기본관세(t)와 마크 업(M)이 부과되더라도 MMA가 국내에서 소진되어 수입에 문제가 없다. 만약 국제가격이 OP_w^1 로 상승하면 수입된 MMA는 가까스로 마크 업 상한에서 소진된다. 그러나 국제가격이 OP_w^1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마크 업 상한치를 초과하면 수입된 MMA물량이 소진되지 않으므로 마크 업을 낮춰야 한다. 또한 국내생산 기술발달 등으로 국내생산이 증가하여 공급곡선이 S 에서 S^1 으로 이동하면 OP_w 하에서 수입된 MMA물량을 소진하기 위해서는 마크 업을 낮춰야 하며 극단적으로 공급곡선이 S^2 까지 이동하면 전혀 마크 업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단, 시장접근물량 완전수입보장은 쌀의 경우 일본이 수입하고자 해도 수출국의 흉작 또는 수출여력감소로 수입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최소시장접근물량이 전량 수입이 안되더라도 의무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쌀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마크 업 상한치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있다. 실제 품목별 마크-업 크기는 기준기간(1986-88) 중에 매매실적에 기초해서 산출하고 있으며 관세상당액(TE) 수준의 약 70-90%(보리가 74%로 가장 낮고 탈지분유가 93%로 가장 높음) 수준에서 결정되었다². 이와 같이 설정된 마크 업은 TE

¹ GATT 17조 국영무역에 따라 양허대상이 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 수입독점을 설정하여 유지할 경우 GATT에 통보하는 보호수준으로 수입차익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크 업은 국영무역기관이 징수하고 기준년도를 기준으로 국영무역기관의 매매가격실적에 기초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그림 1 일본의 마크업 부과 방법



감축과 병행하여 15%를 6년간 감축하도록 되어 있다.

위에서 일본의 국영무역 품목에 대해 마크업을 상세히 언급한 것은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C/S에 마크업을 명기하지 않았고 아직 마크업 부과방법과 운용방법에 대한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의 방법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C/S에 마크업을 명기하지 않아 그 구체적 수치를 양허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일본처럼 국영무역 철폐시 관세와 더불어 보호기능을 보장받지는 못하지만 운용상에 있어서 융통성은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마크업은 관세처럼 사전적으로 정한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 사후적으로 나타난 매매가격차를 의미

하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접근 물량을 수입하여 국내가격수준에 적절히 판매되 양허된 관세상당치 수준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이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 통상마찰의 소지가 된다면 일본의 방법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C/S상의 또 다른 특징은 쌀을 제외한 관세화품목은 모두 종량세로 관세상당액을 설정하고 6년간 최소감축수준인 15%를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마크업과 관세상당치를 모두 종량세³로 한 이유는 증가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제가격변동에 따른 국내가격 변동폭을 줄이고 저가수입농산물을 억제하며 엔고 등 환율변동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보다 상세한 것은 품목별 검토에서 행하기로 하고 품

² 마크업은 실제 거래된 실적에 근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최저수입가격을 사용한 TE 보다는 낮다.

³ 자세한 것은 임정빈, 김동민(1993) 참조.

목별 검토는 수입관리상 특별한 특징을 보이고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쌀, 유제품, 돈육, 전분, 잡사, 쇠고기 등으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2.2 품목별 수입관리

2.2.1 쌀

쌀은 유일하게 관세화 예외조치를 받아 6년간 최소시장 접근물량(4-8%)만 수입하고 이를 지금처럼 국영무역으로 운용한다. 마크업은 관세상당치와는 별도의 것이기 때문에 기준기간(1986-88)동안 식량청에서 매입한 태국산 찹쌀의 매매가격차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292엔/kg(증가세로 환산 731%)으로 설정하고 있다. 마크업 설정기준을 양적으로 훨씬 많은 쇠미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찹쌀을 기준으로 한 것은 마크업 산정에 유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은 최소시장접근(MMA)물량 계산에서도 해당물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볼 수 있다. 쌀의 경우 자유화품목의 수입량은 소비량에서 제외하고 정미율도 미일 평균으로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식료수급표의 국내 소비량(기준년도 평균 9,501천톤)에서 쌀가루조제품 등 자유화품 수입량(20천톤)을 빼고 이를 정미로 환산(정미 환산율은 일본의 0.906과 미국의 0.878을 평균한 0.89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다.

한편 쌀 수입관리제도중 주요특징은 동시매매제도(Simultaneous Buy and Sell : SBS)를 도입해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는 도매업자와 국내 수입업자가 사전에 수입할 쌀의 품질과 수량에 대해 협의하고 사전에 양

자가 결정한 수입조건에 기초해 쌍방이 식량청에 동시 입찰하여 낙찰되게 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본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목적은 첫째, 1965년 이후 쌀이 가공용 원료로만 수입되어 수입 쌀에 대한 정확한 시장평가에 대한 어려움을 제거할 수 있고 둘째, 금번 쌀 파동의 경험에 비추어 해외에서 일본 소비자가 선호하는 쌀 생산을 촉진시킴으로써 앞으로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쌀 파동을 완화하는 등 국영무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대상 품목은 주식용과 가공용 쌀로서 제1차연도에 5,000톤(MMA 1.3%), 제2차연도 10,000톤(MMA의 2.2%), 제3차연도 이후에는 2년간의 결과를 보고 탄력적으로 결정하되 대략 3차연도에는 MMA의 4%, 6차연도에는 MMA의 10%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매매 담당자는 식량청에 등록된 수입업자와 도도부현지사의 허가를 받은 도매업자로 한정하여 입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입관리와 더불어 한층 시장원리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역할은 비축과 최소시장 접근물량 운용에 한정토록 하고 있다. 또한 생산조정, 비축, 최소시장 접근물량이 유기적으로 운용되도록 미곡관리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특히 쌀의 국제시장이 협소하고 일본인이 자국 쌀 선호편중이 심한 것을 고려하여 중기적인 관점에서 비축에 중점을 둔다. 비축분은 자국산 쌀을 중심으로 하되 최소시장 접근물량도 활용하고 비축분 초과시에는 국제공현이라는 관점에서 비축미를 식량원조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최소시장 접근

근물량을 비축미로 돌리고 이를 식량원조라는 형태로 소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국제루올, 비용부담 등의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비축수준은 작년의 흉작을 감안하여 일정한 폭(150-200만톤)을 설정하고 정부비축과 더불어 자주유통미가 기본이 되는 민간비축도 병행한다. 용도는 주식용, 가공용, 원조용으로 하되 오래된 쌀에 대해서는 가공용, 원조용으로 처리한다. 비축시 소요되는 많은 경비는 국민적 합의를 얻도록 하고 수입 쌀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비축보유경비 등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쌀의 관세화예외 특례조치는 7년 후에도 관세화할 수 없다는 의견과 그때 가서 정세를 감안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여러가지 경우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누어져 있다. 관세화 특례조치는 중장기적인 농정방향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이므로 계속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2.2 유제품⁴

우유의 소비는 직접 마시는 음용유(시유)와 가공용 원료유로 구분된다. 직접 마시는 음용유는 신선도 등의 문제로 수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보호가 없으나 대체성이 높고 경쟁력이 뒤지는 유제품은 축산진흥사업단이 국영무역을 통해 국내 우유 및 유제품을 보호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유제품 국영무역을 부족불제도와 연계되어 운용되고 가격안정을 위해 가격안정대가 설정되어 있다. 정부가 원료가공유 재생산을 우유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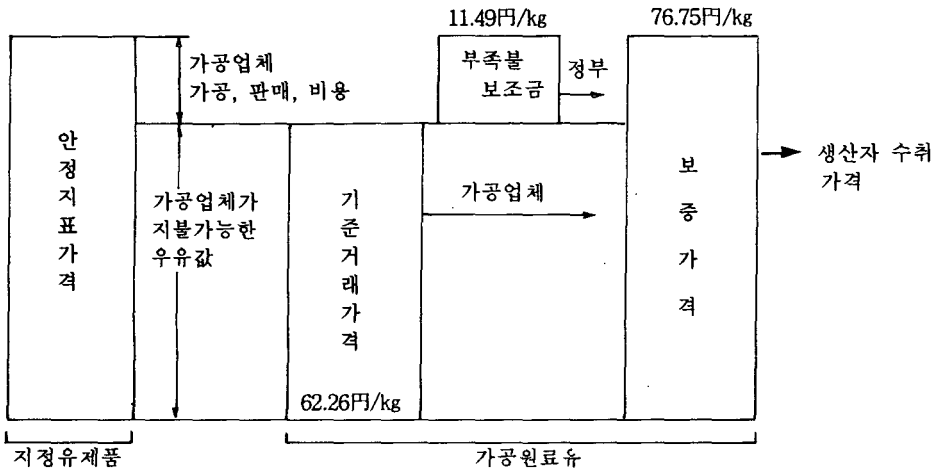
자에게 보장하는 보증가격과 유가공업체가 생산자에게 지불할 수 있는 기준거래 가격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차이를 정부가 부족불로 지불하고 있다(그림 2참조).

더욱이 지정유제품(원료용 버터, 탈지분유, 전지가당연유, 탈지가당연유)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장관이 안정지표가격을 매년 설정하고 유제품을 국영무역으로 운영함으로써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제품의 안정지표가격은 원료가공유의 기준거래 가격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원료가공유의 가격지지는 수입유제품의 일원적 관리 즉, 국영무역을 전제로 성립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축산진흥사업단은 지정유제품의 수입을 일원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국내 가격안정을 위해 수매방출을 행하고 있다. 축산진흥사업단은 지정 유제품의 안정지표 가격을 매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안정지표가격을 4% 초과할 경우 가격안정을 위해 보유재고 물량을 방출하거나 해당 유제품을 수입할 수 있다. 또한 반대로 시장가격이 안정지표가격보다 10%이상 하락할 경우 가격안정을 위해 유제품을 매입한다. 축산진흥사업단은 유제품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지정유제품 가격을 14% 안정대에서 유지함으로써 안정지표가격과 연결되어 있는 가공원료유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유제품 국영무역은 완벽하게 국내 유제품과 가공원료유가 연계되어 있으며 축산진흥사업의 유제품 수입방출 및 수매는 법적 근거에 의해 자동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도록 되어 있다. UR 협상타결로 일본의 유제품 수입관리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⁴ 자세한 것은 김동민(1994) 참조.

그림 2 가공원료유 및 지정 유제품 가격지지 구조, 1993



아니나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유제품을 관세화 하되 부족불제도와 축산진흥사업단에 의한 국영무역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왜냐하면 국내보조감축(6년간 20%)이 농업 전체 또는 축산부분으로 볼 때 현시점에서 모두 문제가 없어 부족불제도 시행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기준년도에 비해 농업전체로는 26%, 축산부분으로 35.8%가 이미 국내보조가 삭감된 상태로 6년간 국내보조 감축의무가 없음).

둘째, 엔고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관세인 종가세에 종량세를 더한 복합 관세를 도입하고 마크-업은 현재 국영무역에서 부과하는 실제 마크-업보다는 높게 책정하였다. 따라서 국영무역 운용물량(시장접근물량)의 경우 수입품의 국내가격이 안정지표 가격을 상회하기 때문에 수입품이 국내유통

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시장접근 초과물량의 경우도 수입품가격이 안정지표가격을 상회하도록 책정되어 2차관세(TE)에 의한 수입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표 1 참조).

셋째, 국영무역 품목인 버터와 탈지분유 등 지정 유제품을 품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연간 13.7만톤(원유 환산수량)으로 정함으로써 품목간 융통성을 확보하고 있다.

넷째, 수입자유화로 수입이 급증하여 유제품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조정식용유지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 새로운 고율의 2차관세를 신설하였다. 조정식용유지는 자유화된 품목이나 대체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이번 UR 협상에서 관세화를 얻어 낸 품목이다. 따라서 동품목의 경우 2차관세(TE)는 1,363엔/kg + 기본세율(35%)의 고율의 관세가 적용된다.

표 1 일본의 수입유제품 가격과 안정지표가격 비교

단위 : 円 /kg

품목	수입가격 (CIF) ①	1차관세 (기본세율) ②	2차관세(TE) ③		mark-up ④		시장접근물량내 수입품 국내가격 ⑤=①+②+④		시장접근 물량초과시 수입품국내가격 ⑥=①+③		안정지표가격 (93년도) ⑦	⑥/⑦	
			기준년도	2000년	기준년도	2000년	기준년도	2000년	기준년도	2000년		기준년도	2000년
버터	267	93	1,200	1,020	926	808	1,286	1,168	1,470	1,290	1,032	1.42배	1.25배
탈지 분유	231	58	500	425	349	304	638	593	730	655	514	1.42배	1.27배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이와 같이 자유화된 품목을 최선을 다해 관세화로 만든 것은 조정식용유지가 위장유제품으로 상당량 수입되었고 유제품은 그 종류가 대단히 많아 그 상호 대체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본이 유제품에 대해 최대한의 보호조치를 강구한 것은 일본의 축산정책과 맥을 같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시설형 축산(양돈, 양계)은 이미 대기업이 참여하는 등 이미 발전된 단계 또는 농민의 손을 떠난 단계로 보고 국토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토지이용형 축산(비육우, 젓소)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국영무역대상 유제품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을 수입하고 가격상승시 축산진흥사업단에서 추가분을 수입하되 시장접근물량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국영무역으로 운용하고 특히 2차관세(TE)를 지불하고도 수입되는 경우는 해당 차익금을 순간 터치방식으로 축산진흥사업단이 징수한다는 것이다(그림 3조). 이는 민간기업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것을 수입할 수 있어 2차관세를 물고도 수입이 가능한 경우 그 관세가 국세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터치방식에 의해 축

산진흥사업단으로 흡수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쇠고기 수입자유화시 관세수입을 국내 송아지 보조금으로 사용한 경우처럼 수입증가에 의한 관세수입은 해당 피해품목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세수입 형태의 자금확보는 조세저항이 적고 안정적인 자금확보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 이를 GATT에서 인정하는 직접소득 보상형식으로 보상한다면 순간터치방식은 매우 바람직한 제도로 보인다. 이를 위해 가공원료유 생산자보급금 잠정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상정중이다.

순간터치방식 운용방법(UR 이행관련법안 중 가공원료유 생산자 보조금 잠정조치법 제 3조 및 제14조부터 14조 5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만약 TE를 지불하고도 지정유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낙농 및 유가공업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영향에 대해 사업단이 기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세상당량의 일부(마크-업 상한)를 순간터치방식으로 징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TE를 지불하고도 수입하려고 수입신고하는 자는 지정유제품을 사업단에 매도한다. 단 다

음의 경우는 제외함(① 사업단이 위탁하여 수입하는 경우 ② 지정유제품 가격안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정령이 정한 경우). 이 때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전에 사업단에 매도의사를 표시하여 승낙을 받고 사업단과 매도계약을 체결한다. 사업단의 매입가격은 수입신고가격으로 한다. 사업단이 수입업자로부터 매입하고 이를 다시 해당 수입업자에게 마크-업 상한을 붙인 금액에 다시 매도한다. 즉 수입업자는 이를 다시 사야 하며 이러한 채무이행을 위해 사업단은 보증금, 증권, 기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지정유제품이 변질된 경우 매입이나 되팔 때 농림수산성령에 따라 해당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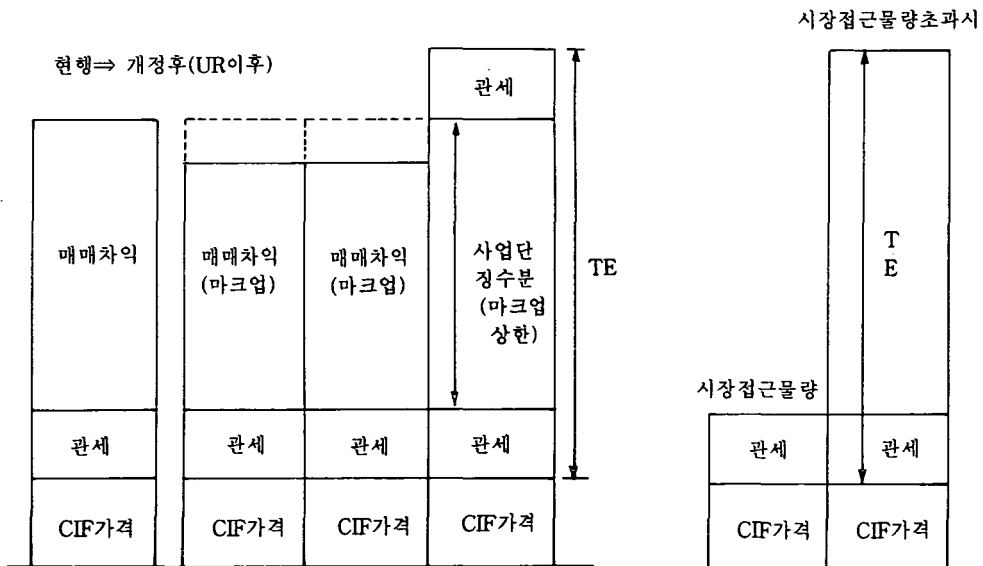
2.2.3 돈육

돈육은 경영규모의 확대가능성과 생산성 향상이 비교적 용이하고 품질상 외국산과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본은 1971년 자유화하면서 국내 가격안정제도와 링크(link)시킨 차액관세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 수입은 분기점 가격(차액관세와 기본관세가 같아지는 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것은 기본관세(정율)를 적용하고 분기점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것은 기본관세(정액; 기준수입가격 - CIF가격)를 적용한다(그림 4 참조). 따라서 수입

그림 3 유제품 수입제도

가. 국영무역대상 유제품의 경우

나. 국영무역이외의 유제품의 경우



요건 : 가격상승시 현행시장접근 가격상승시 물량(13.7만톤)

수입주체 : 사업단 사업단 사업단 민간

돈육가격이 안정수입가격(기준수입가격)을 밑도는 경우가 없다. 이처럼 일본이 차액관세제도를 채택한 배경에는 해외돈육시장의 수급변동에 따라 값싼 외국의 돈육수입이 급증할 경우 국내 돈육의 수급은 물론 축산농가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데 있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차액관세적용의 그 배후의 숨은 의도인데 소득증가에 따라 돈육수요가 고급부위에 편중됨으로써 값이 싼 저급부위에는 고율의 관세(차액관세)를 부과하고, 값이 비싼 고급부위에는 기본세율만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과잉되는 저급부위의 수입을 막고 부족되는 고급부위에 한하여 수입을 유도하고 있다.

일본의 차액관세제도에 대해 EC는 관세화를 요구했고 미국은 관세화를 요구하지 않

고 현행수준에서 관세인하를 요구한 반면 일본은 차액관세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입장에서 협상에 임했다. 교섭결과 관세화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현행의 차액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되 관세를 인하한다. 왜냐하면 EC 주장대로 차액관세를 관세화 하면 일정부분(CIF가격 0에서 58엔까지)을 제외하고는 차액관세보다 더 높은 관세부과라는 역전현상(점선)이 발생하므로 일정부분은 관세화하고 역전부분은 차액관세로 남겨 두되 미국의 의견을 수용해 관세 및 기준수입가격을 인하하도록 했다. 새로운 관세제도는 ① 관세화에 의한 종량세의 적용부분(CIF가격으로 0에서 차액관세와 TE가 일치하는 58엔까지) ② 차액관세 적용부분(58엔서 분기점 460엔까지) ③ 증가세 부과부분(460엔 이상) 등 3가지로 구분된다(그림 5 참조). 이

그림 4 일본의 차액관세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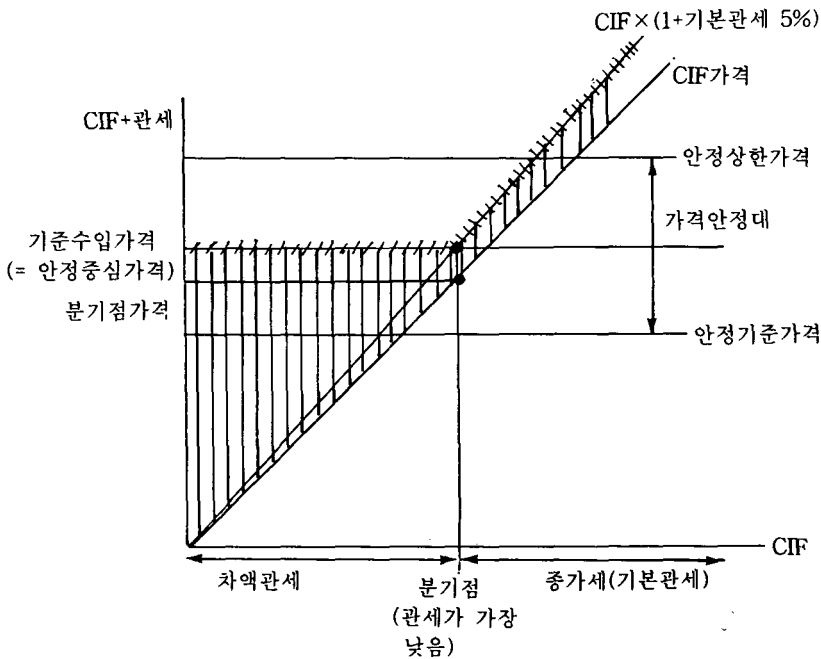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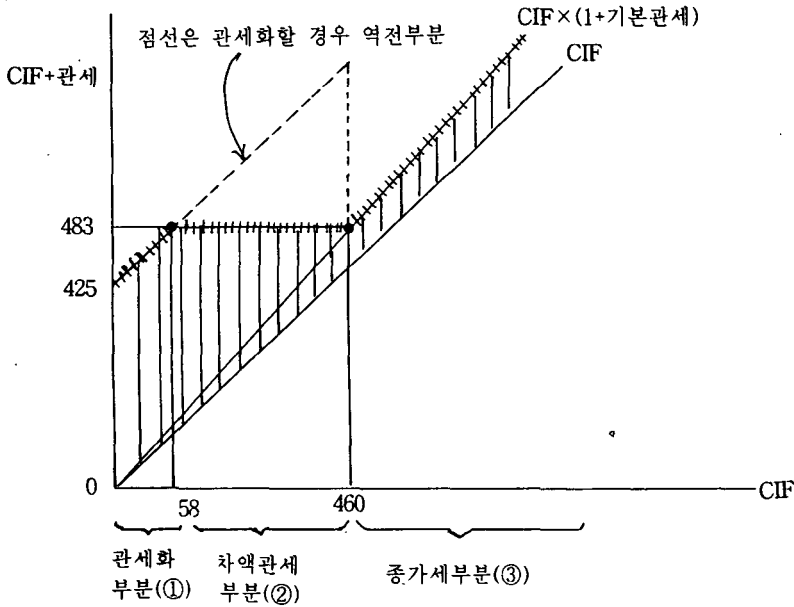


그림 5 UR이후 돈육수입제도



에 따라 EC가 주장한 관세화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미국의 관세인하를 수용한 외에 일본의 차액관세제도의 유지라는 3가지 명제를 충족하는 조건으로 타결되었다. 따라서 종량세 부분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 주요특징이나 CIF가격 58엔(부분육의 경우 76엔) 이하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수급상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인하 내용은 기본관세(그림 4에서 증가세부분: 증가세 5%)를 6년간 15% 감축하여 2000년에 4.3%로 인하하고 차액관세 기준이 되는 기준수입가격도 15% 인하하여 2000년에는 410엔/kg이 되며 관세상당액(TE: 425엔/kg)도 15% 인하하여 2000년에는 361엔/kg으로 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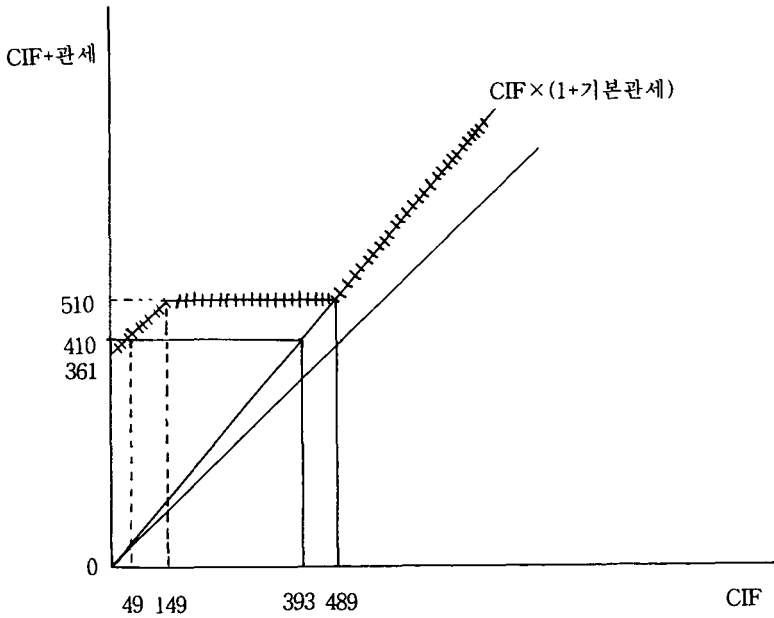
단 TE와 기본관세는 매년 균등분할하여 인하하되 기준수입가격은 가격안정대와 연

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균등분할을 약속하지 않고 6년간 15% 인하하도록 약속했다. 이와 더불어 미국과의 교섭에 의해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SSG) 이외에 별도로 수입량증가시(과거 3년의 평균수입량의 119% 이상) 분기점 가격수준을 인상할 수 있는 긴급조정조치(SG: Self-Guide)를 도입하기로 했다(그림 6 참조). 따라서 관세화부분에 대해서 SSG를 차액관세와 증가세 부과부분에 대해서는 SG를 각각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2.2.4 전분

전분의 용도는 다양하나 약 60%가 이성화당 등 당화제품에 사용된다. 1975년 이후 청량음료 원료를 설탕에서 이성화당으로 대체되면서 당화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지

그림 6 일본 돈육의 경우 긴급조정조치(SG) 발동시 관세수준(2000년 기준)



만 최근 소비자의 당분에 대한 기호가 감소 하면서 전분수요는 감소하고 있다. 수요에 대한 전분공급은 81% 정도가 수입 옥수수에서 만들어지며 자국산 서류에서 만들어지는 전분은 약 13%(고구마 3.4%, 감자 9.3%), 나머지 6%는 수입전분으로 충당된다. 이처럼 일본이 전분을 보호하는 이유는 전분 원료가 되는 자국산 서류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일본의 전분수입 관리제도는 혼합규정(mixing regulation)⁵으로 그 시행방법은 국내산과 수입품을 일정량 혼합하도록 규정하고 가공업자는 국내 농산물을 구입하는 대가로 수입권(쿼터)을 부여받는다. 따라서 가공식품의 소비자가격(P_c)은 수입가격(P_w)과 생산자가격(P_s)의 가중평균가격이 되어 수

입가격(P_w)보다는 높고 국내생산자가격(P_s)보다 낮게 된다. 이와 같이 소비자가격(P_c), 수입가격(P_w), 생산자가격(P_s)의 3개의 가격이 존재하게 된다. 이때 국내 농산물에 대한 수입량의 비율(γ)은 가공식품 내용물중 국내 농산물의 비중(V)으로 쉽게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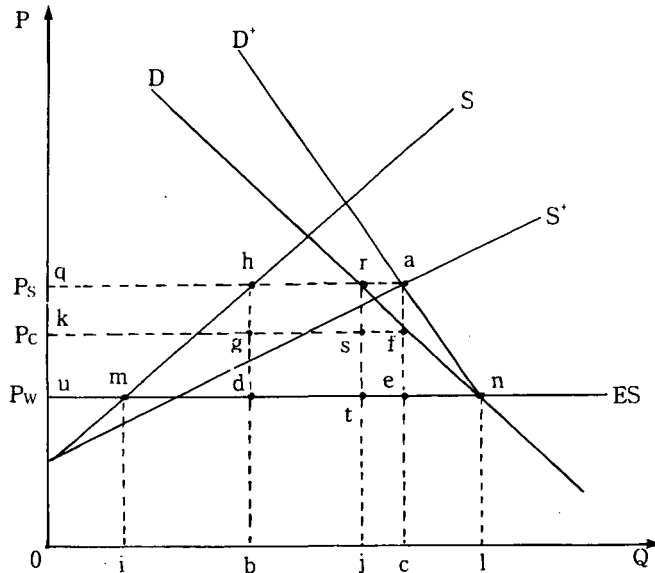
$$\text{즉, } V = \frac{1}{1 + \gamma} \quad \gamma \geq 0, \quad 0 < V \leq 1$$

예컨대 $\gamma = 1.0$ 이라는 의미는 국내 농산물과 수입품과의 비율이 1 : 1로써 가공품 내용물중 국내 농산물의 비중은 50%가 된다.

(그림 7)에서 가공식품의 수요와 공급함수를 각각 D , S 라 할 때 정부에 의해 γ 이 주어지면 국내 총공급곡선 S_+ 는 $(1 + \gamma)S$ (국내공급분 + 혼합규정에 의한 수입분)로

⁵ 자세한 것은 김동민(1988) 참조.

그림 7 혼합규정의 효과



표시할 수 있다.

이 때 국내소비자가격은 국내 생산자가격과 수입가격과의 가중평균에 의해 결정된다.

즉 가공식품은 단위당 $\frac{1}{1+\gamma}$ 단위의 국내 농산물과 $(1 - \frac{1}{1+\gamma})$ 단위의 수입품이 포함되므로

$$(1) \quad P_c = \frac{1}{1+\gamma} P_s + (1 - \frac{1}{1+\gamma}) P_w$$

$$= V P_s + (1-V) P_w$$

(1)식을 P_s 로 다시 쓰면

$$(2) \quad P_s = P_c + \gamma (P_c - P_w)$$

$$(\because \gamma = \frac{P_s - P_c}{P_c - P_w})$$

이와 같은 가격관계는 D_+ 를 상징할 수 있게 하는데 D_+ 는 oc 만큼 내부적으로 소비시키기 위한 생산자지지가격(P_s)의 궤적이다. 따라서 D_+ 는 D 보다 $\gamma(P_c - P_w)$ 만큼 위쪽에 위치하게 되고 생산자가격(P_s)은 소비자가격(P_c), 혼합비율(γ), 수입가격(P_w)으로 구성된다. D_+ , S_+ 의 교점 a 는 균형생산자가격이고 균형 총공급(수요)량을 나타낸다. 국내생산은 높은 생산자가격 P_s 에서, 소비는 P_s 와 P_w 의 사이인 P_c 에서 행해지게 된다. 이 때 국내생산은 ob , 수입량은 bc , 소비량은 oc 가 되고 $\gamma = bc/ob$ 로 표시된다. γ 이 사전적으로 정해짐으로써 수입량과 국내생산은 비례관계에 있게 되고 단위당의 Quota rent($P_c - P_w$)와 단위당 생산보조금(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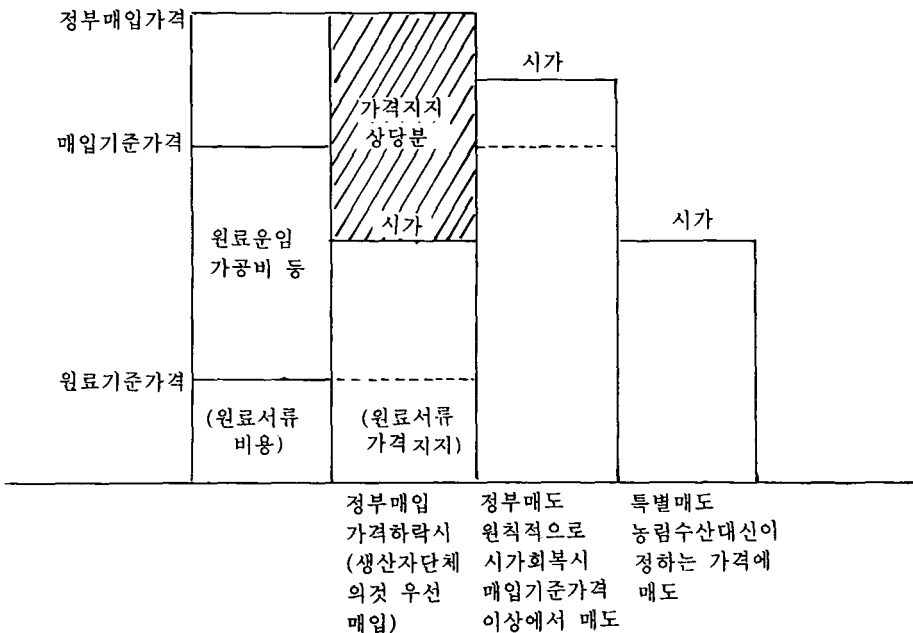
s-Pc)도 비례관계에 있게 되므로 Quota를 받은 수입업자의 Quota rent 총액인 $\square def$ 와 국내생산 보조금 총액 $\square kghq$ 는 일치하게 되고 Quota rent는 생산 보조금으로 자동 전환된다. 사실 혼합규정은 (Pc-Pw)만큼 정부가 관세를 부과하여 얻은 수입을 생산량에 따라 생산자에게 분배해 주는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혼합규정은 GATT 3조 내국민 대우원칙에 위배되며 무역에 대한 보호주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혼합규정이 양허를 무효화시키고 수입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주의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수출국은 이의 폐지를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쿼터(Quota)에 비해 보호주의 성격이 적기 때문에 혼합규정에 대한 규제는 용인할 수 있는 것으로 믿어 왔고 이

러한 규제가 유치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생각해 왔다. 이와 같은 논리로 협상에 임한 일본은 종전같이 혼합규정을 인정받아 전분산업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전분은 혼합규정과 함께 가격안정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패리티방식에 의해 계산된 매입기준가격보다 시중가격이 하락하면 이를 정부가 매입함으로써 원료인 서류의 가격을 지지하고 정부가 매입한 전분은 원칙적으로 시중가격이 회복된 후에 매입기준가격 이상에서 매도하도록 되어 있다(그림 8 참조). 단 다음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데 ① 신규용도 및 판로개척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연구시험용으로 제공되는 경우 ③ 판리상 필요한 경우 등이다.

UR 타결로 전분은 관세화됨으로써 현행

그림 8 일본의 전분 가격안정제도



시장접근물량(15.7만톤) 보장과 관세상당량(140엔/kg)을 6년간 15%로 감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전분의 주원료인 공업용 옥수수와 국산 전분의 혼합규정은 1994년 비율(국산1, 수입11)을 그대로 유지하며 신규 용도 증가분 45만톤중 33만톤에 대해서는 혼합규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전분원료인 옥수수는 무세로 되어 있는데 통상용도(1994년 375만톤) 이외에 신규 용도(6년간 45만톤 증가시키고 최종년도에는 55.2만톤으로 증가)에 대해서 무세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농산물가격안정법(안)을 마련하였다. UR타결로 수입량이 증가할 것이나 국내 수요가 정체경향을 보이고 있어 장기간 정부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재 정부재고의 매도를 시중가격이 회복된 후에 하도록 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로 되어 있는 것에 다음의 경우를 추가하고 있다. ① 기존용도 또는 판로 개척이라도 전분수요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정부재고가 일정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③ 정부재고 보관기간이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 추가되어 정부재고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2.5 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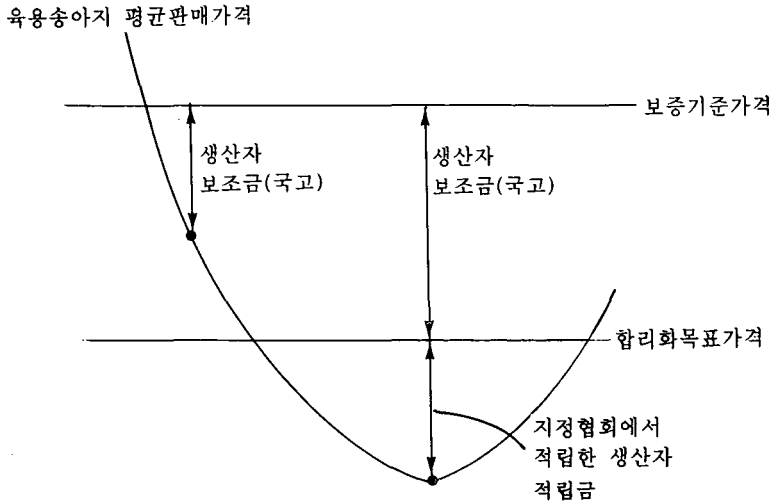
잠사는 국영무역품목으로 지금까지 잠사 설탕가격안정사업단이 일원적으로 수입해오므로써 국내 누에고치농가를 보호하고 가격안정대사업을 통해 가격안정을 유도해 왔다.

UR 타결로 현행시장접근물량은 누에고치와 생사를 합계(생사로 환산)한 798톤으로 하고 관세상당액은 누에고치 2,968엔/kg.

생사 8,209엔/kg으로 하되 6년간 15%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다. 잠사는 다른 국영무역품목과 달리 마크-업을 설정하지 않고 있으나 유제품처럼 관세상당량의 일부를 순간터치방식으로 사업단이 흡수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관세상당량을 지불하고도 수입되는 생사가 국내잠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업단이 기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순간터치방식이 도입되었다. 사업단이 흡수하는 금액은 유제품의 경우 마크-업 상한을 사업단이 회수하나 생사는 마크-업이 없어 관세상당량의 일부인 3,910엔/kg(관세상당량의 약 48%)을 유제품과 동일한 방식에 의해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견직물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생사수요의 증진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수급상 필요한 수입량(농림수산대신이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생사가격의 안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순간터치방식으로 흡수되는 금액인 3,910엔/kg을 감면해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TE수준을 낮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순간터치방식에 의해 징수된 금액을 사업단이 잠사업진흥자금으로 흡수하고 이를 순간터치방식의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마크-업을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시장접근물량 전부를 사업단이 국영무역으로 수입하지 않고 그 일부만을 수입하고 실수요자도 시장접근물량의 일부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융통성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잠사가격안정법 및 잠사설탕류가격안정사업단법의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2.2.6 쇠고기

그림 9 육용송아지 생산자보조금 제도



쇠고기는 1990년 수입자유화조치 결정에 따라 쇠고기안정대가격제도가 실시되었고 육용송아지생산안정제도를 1990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쇠고기 수입자유화와 관련하여 자국쇠고기 생산의 기초가 되는 송아지의 생산을 안정시켜 자국쇠고기 생산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육용송아지생산안정제도는 농림수산대신이 정하는 보증기준가격과 합리화목표가격을 통해 운영된다(그림 9 참조).

보증기준가격은 육용송아지 생산조건, 공급사정, 기타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재생산을 확보하기 위한 가격 즉 생산비를 보장하는 가격이며, 합리화목표가격은 쇠고기 자유화 후에도 수입육류와 경쟁할 수 있는 가격⁶ 즉

수입육가격에 품질격차를 곱한 가격으로 장기적으로 이 수준으로 생산비를 인하하겠다는 가격수준이다. 이 때 시장평균판매가격이 합리화목표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보증기준가격과 합리화목표가격의 차이는 국고(축산진흥사업단)에서 보전하고 합리화목표가격과 평균판매가격과의 차이는 그 금액의 90% 정도를 지정협회가 적립한 생산자적립금(생산자 25%, 도도부현 25%, 국고 50% 각각 부담)에서 보전하도록 한다. 이것은 수입자유화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가격하락분에 대해서만 전액국고에서 보전하고 그 이외의 가격변동에 의한 변동하락분은 생산자 적립금에서 지불하도록 고안된 제도이

⁶ 합리화목표가격 계산은 수입육 수입가격(부분육)에 관세를 더해 품질계수를 고려한 후 부

분육을 비육우로 환산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수입육에 대항할 수 있는 국산육의 가격을 뜻한다.

다. 보증기준가격과 합리화목표가격사이에서 지불되는 국고재원은 수입쇠고기의 관세 수입액을 사용한다. 즉 수입쇠고기 관세수입을 관세로 흡수하지 않고 육용송아지 생산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UR 협상에서 쇠고기 관세인하는 6년간 50%를 38.5%로 인하한다. 당초 미국은 이보다 낮은 32%를 요구했는데 이는 미국이 쇠고기를 자유화하면서 미국 쇠고기의 수입 2차관세가 30%정도를 낮아졌기 때문이다. 만약 일본관세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 호주산 저가쇠고기가 일본에서 미국으로 유입될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세인하를 조건으로 일본은 수입량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4분기마다 수입량 누계가 전년동기 117% 초과하는 경우) 남은 4분기에 대해 관세를 50% 부과할 수 있는 특별 세이프가드를 얻어냈다.

3. 시사점

일본의 경우 1960년초부터 농산물이 수입자유화 되어 왔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이 수입자유화 되었고 일부 품목이 잔존수입제한이라는 명목으로 남아 있다. 잔존수입제한 품목중 중요 품목을 국영무역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UR에 임하는 일본의 입장은 기존의 수입제한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수입관리에 큰 변화가 없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중요 품목이 수입제한되어 있었고 UR 타결로 이들 품목이 시장접근보장을 통해 일시에 수입될 수밖에

에 없는 처지에 있다. 따라서 일본과 한국이 UR 이후 수입관리에 임하는 접근방법과 생각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본 수입관리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에도 한계가 있겠지만 우리보다 한발 앞서 생각하고 준비해 온 일본의 수입관리 운용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UR 이후 일본의 농산물수입관리제도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일본은 국영무역에 마크-업을 명기함으로써 GATT 17조와 2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국영무역이 불가능해질 경우에도 관세와 더불어 보호기능을 유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행계획서(C/S)에 마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C/S에 마크-업을 부과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부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시장접근물량을 수입해서 시장상황에 따라 마크-업을 붙여 국영무역을 운용해도 될 것으로 보이며 이 때 마크-업의 상한은 관세 상당액(TE)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 대해 이해당사국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일본의 방법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일본은 쌀의 경우 효율성 제고와 시장평가를 위해 SBS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SBS제도 배후의 숨은 의도는 품질 좋은 미국 쌀을 시장원리에 따라 도입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속사정은 대미 통상마찰을 미연에 방지하고 점진적으로 캘리포니아 쌀과 경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SBS제도를 도입할 경우 캘리포니아 쌀이 국내 식탁에 오를 것이므로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단지 효율

성 제고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도입시기도 당장은 불가능하고 장기에 걸쳐 도입하되 점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일본의 SBS제도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마크-업을 설정할 경우 일본처럼 실제 거래된 매매가격차 중 가장 유리한 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최소시장접근으로 수입되는 쌀을 전부 가공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대통령 지시로 검토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처럼 MMA물량을 비축물량으로 돌리고 1년 후 이를 원조용(여건에 따라 북한 원조용)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과잉시를 대비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의 관심을 끄는 항목은 2차관세(TE)를 지불하고도 수입되는 유제품의 경우 TE의 일부를 순간터치방식으로 해당 사업단이 징수한다는 것이다. 이는 민간기업이 국영무역기관보다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것을 수입할 수 있어 2차관세를 물고도 수입이 가능할 경우 그 관세가 국세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터치방식에 의해 관세상당액(TE)의 일부를 해당 사업단이 흡수한다는 것이다. 특히 순간터치방식에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 또한 특이하다. 유제품의 경우 사업단이 흡수하는 금액은 마크-업의 상한을 초과하도록 한 반면 생사의 경우는 마크-업 부과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마크-업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도록 하고 있다. 생사의 경우 수급상 필요한 수입량으로 인정될 때 순간터치방식 금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제적으로 TE수준을 낮출 수 있는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국영무역기관이외의 민간수입

의 추가적인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순간터치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순간터치방식은 내국세보다 조세저항이 적고 장기적으로 기금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이를 통해 피해농민에게 직접소득보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참가의 경우 CIF가격에 관세상당액(TE)이 부과되더라도 수입원가가 국내시장 유통가격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민간에 의한 수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는 원칙에 따라 관세상당액을 관세수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순간터치방식에 의해 피해농민에게 환원하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일본은 국영무역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유제품의 경우 최소시장접근물량을 사업단이 수입하고 다시 가격이 상승할 경우 시장접근물량 이외의 추가량을 수입할 경우도 국영무역과 동일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생사의 경우는 마크-업을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시장접근물량을 국영무역과 실수요자가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영무역이 시장접근물량에 국한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이상으로 확대해석할 것이냐로 논란이 있었는데 일본의 경우에서 하나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다섯째, 일본은 유제품에서 본 것처럼 서로 대체관계가 높은 품목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예컨대 원료와 가공품간 문제, 가공품간의 성분비율의 차이를 고려하여 TE나 마크-업을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충분한 고려가 없었다. 예컨대 감자는 국영무역 또는 마크-업 대상품목이나

가공품인 감자분, 감자 플레이크는 대상품목이 아니고 둘의 TE가 동일하게 되어 있어 가공을 등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원료와 가공품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수입관리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일본전분의 경우 적용되는 혼합규정은 우리나라 맥주맥 및 전분의 경우(혼합규정비율은 없고 국내산 인수후 부족분을 수입으로 충당)와 유사하나 일본의 혼합규정이 보다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혼합규정도 하나의 수입관리방법이므로 이의 활용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GATT 3조 내국민 대우원칙의 위배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요 통상국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일본의 쇠고기 수입자유화조치에 따라 도입한 육용송아지 생산자 보조금제도는 앞으로 있을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수입자유화에 시사하는 바 크다고 생각한다. 즉 합리화목표가격을 엄밀히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상하되 수입자유화로 인한 피해는 국가가 보상하며 그 재원은 수입관세로 함으로써 그 합리성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보증가격을 낮추고 국내생산비를 합리화목표 가격수준으로 가져감으로써 수입자유화로 인한 피해를 점진적 줄이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한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경우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SSG)와는 별도로 긴급조치(SG)를 UR협상에서 얻어냄으로써 수입급증에 따른 피해구제를 보완하고 있다.

여덟째, 일본의 돈육수입제도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수입관리보다 수입피해의 보상 및 대책이라는 차원에서 향후 우리나라

돈육수출시장으로의 의미가 크다. 일본의 돈육시장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수출시장으로서의 유리성이 높고 대단히 큰 시장(1993년 일본의 돈육수입액 30억불)이다. UR 이후 일본의 돈육수입제도가 다소 변화되었지만 차액관세제도가 유지되는 관계로 계속 고급육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보이며 차액관세의 기준이 되는 기준수입가격 및 정올관세의 인하로 일본 돈육수출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일본이 순간터치방식에 의해 흡수하는 금액을 처음에는 TE 전 금액으로 하였으나 마크-업 수준으로 조정된 이유는 재무성의 이의제기로 TE를 관세수입과 기금으로 양분한 것인지 아니면 국영무역기관이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마크-업 수준을 초과할 수 없어서 TE의 일부분만을 흡수하도록 한 것인지 그 내부사정은 알 수 없다. 전자의 경우라면 우리나라가 순간터치방식을 도입할 경우 TE 전체 또는 그 일부를 자유로이 기금으로 흡수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라면 마크-업을 계산하고 그에 준해 순간터치방식을 사용해야 할 것이므로 순간터치방식 도입에 앞서 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김동민, "농축수산물 식공식품의 혼합규정 도입에 관한 소고", 『농촌경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11권 제3호, 1988.
- , "일본의 국영무역 운용현황과 시사점", 『농촌경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17권 제2호, 1994.
- 임정빈, 김동민, "농림수산물 종량관세 도입에 관한 연구", 『농촌경제』,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제16권 제4호, 1993.
農林水産省, “GATT/UR 農業合意と我が國別
表の概要”, 1994. 1.

———, “UR關聯農業部門法律(案)”, 1994.
農政審議, “新たな國際環境に對應した農政の展
開方向”, 1994. 8.

부표 1 UR타결이후 일본의 농산물 수입제도 개요(C/S 내용 요약)

품 목 (품목수)	현재의 국경조치	관 세 화 에 따 른 국 경 조 치				
		국경조치의 기본적인 틀	MMA물량 (국내소비량%)	기본세율	Mark-up (6년간 감축율)	MMA 초과물량 : 관세상당액(TE)부과 (6년간 감축율)
• 쌀(7) (조제품 포함)	• 수입수량 제한(IQ) 국영무역	• 수입수량제한(IQ) 및 국영무역제도 유지 • MMA 물량은 379천톤(4%) → 758천톤(8%) (정미기준) • Mark-up은 292¥/kg				관세상당액 설정없음(관세화 특례조치)
• 맥류(11) (조제품 포함) 밀 보리	• 수입수량 제한(IQ) 국영무역	• 국영무역 수지	• 5,565천톤(84%) →5,740천톤 (87%) • 1,326천톤(80%) →1,369천톤 (82%) 톤(84%)	무세	• 53¥/kg →45¥/kg (△15%) • 34¥/kg →29¥/kg (△15%)	• 53¥/kg → 45¥/kg (△15%) • 34¥/kg → 29¥/kg (△15%)
• 유제품(8) (조제품 포함) - 탈지분유 - 버터	• 수입수량 제한(IQ) (일본국영 무역)	• 일부품목에 대해 국영무 역 유지	• 축산진흥산업단 (생유환산) 137천톤 →137천톤 • 민간무역 - 학교급식사료 (제품포함) 탈지분유 : 93천톤 버터 : 1.9천톤	탈지분유 25% 버터 35%	• 358¥/kg →304¥/kg (△15%) • 950¥/kg →808¥/kg (△15%)	• 466¥/kg+25% → 396¥/kg+21.3% (△15%) • 1,159¥/kg+35% → 985¥/kg+29.8% (△15%)
전분(2) (조제품 포함)	• 수입수량 제한(IQ)	• 관세할당제도 (TQ)	• 157천톤(6.3%) →157천톤 (6.3%)	25%		• 140¥/kg → 119¥/kg (△15%)
감두(1)	• 수입수량 제한(IQ)	• 관세할당제도 (TQ)	• 120천톤(49%) →120천톤 (49%)	10%		• 417¥/kg → 354¥/kg (△15%)
낙화생(1)	• 수입수량 제한(IQ)	• 관세할당제도 (TQ)	• 75천톤(10%) →2670천톤 (8.2%)	10%		• 726¥/kg → 617¥/kg (△15%)
사탕수수 (1)	• 수입수량 제한(IQ)	• 관세할당제도 (TQ)	• 267천톤(8.2%) →267천톤 (8.2%)	40%		• 3,289¥/kg → 2,796¥/kg(△15%)
소 계	21					

품 목 (품목수)	현재의 국경조치	관 세 화 에 따 른 국 경 조 치				
		국경조치의 기본적인 틀	MMA물량 (국내소비 량%)	기본세율	Mark-up (6년간 감축율)	MMA 초과물량 : 관세상당액(TE)부과 (6년간 감축율)
생사·누에 고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수입 제한 - 생사 : 국명 무역 - 누에고치 : 사전확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사 : 국여무역 • 누에고치 관세할당 제도(TQ)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98톤(7.6%) →798톤(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사 7.5% • 누에고치 140¥/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사 : 8,209¥/kg →6,978¥/kg(△15%) • 누에고치 : 2,968¥/kg →2,523¥/kg(△15%) 	
돈육(5) (조제품 포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액관세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액관세제도를 관세화하고 기준수입가격을 현행 428.5¥/kg(지육기준)에서 15%감축 • 특별 Safeguard와 더불어 수입량 급증시 분기점 가격을 인상하기 위한 긴급 조정 조치를 도입함. • CMA물량을 약속으로 보장하지 않음 				

주) 품목수는 HS 4단위 기준이나 중복으로 집계와 일치 않음